

[일련번호 : 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구세입처리 지연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0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,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“사용료의 납무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,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회계법」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 세입처리를 최소 19일에서 최대 87일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수입금 처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[표]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금 처리 등 부적정 내역

연번	사용자명	신청일	사용기간	사용료 (원)	세입처리	지적사항
1		23.1.19.		5,000	23.2.20.	세입처리 지연(19일)
2		24.1.2.		10,000	24.5.10.	세입처리 지연(87일)
3		24.3.21.		8,000	24.5.10.	세입처리 지연(33일)
4		24.5.23.		10,000	24.7.7.	세입처리 지연(29일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